

.....> = Simposium (Ⅲ) = 傷害診斷에 關하여 <.....

- 1) 診斷書作成에 關하여..... 趙 泳 弼
- 2) 진단서 발부에 있어서의 문제점..... 李 勝 雨

傷害診斷에 關하여 中 診斷書 作成에 關하여

慶熙大學校 齒科大學

助教授 趙 泳 弼

기계文明이 發達하면서 우리의 生活양상도 또한 많이 달라지는 것은 누구나 알수있고 이에 따른 이득도 多數로 나타나 人間이 萬物의 영장이라는 것을 뚜렷이 表示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機械文明으로 오는 손상은 오늘날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齒科分野의 顎顔面 손상은 더 더욱 큰 問題이고 그治療 그후 또한 診斷書作成에도 크나큰 障방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하므로 齒科分野에서 診斷書を 쓴다는 것도 요즘에 와서는 重要한 역할을 하고있다.

특히 口腔주위조직에 發生한 疾病보다는 이미 설명한 外傷에서 이 診斷書는 더욱 必要하고 一般人은 그기간을 가지고 注意깊게 觀察되어 지고 있는것이다.

過去에는 診斷書 양식도 여러가지로 나누어 作成하여 주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대략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즉 “진단서” “상해 진단서”로써 되어 있으며 (그림 1 및 2참조) 過去양식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두가지양식 모두가 “국제질병분류번호” (疾病傷害 및 死因統計基本分類表) (“公齒” Vol.1—2號 1973 참조)를 해당병명(診斷名)에 기입하여 준다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診斷書 作成에 있어서 중요한 것만을 간추려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하겠다.

진단서의 병록번호는 진단서작성 병원 의원의 Chart 연번호를 기입하여 주어 후일에 확인하는데 필요하고 연번호는 진단서 작성 복사 1부가 남아있는 계속번호를 기록하여 주고

주민등록 번호는 本人의 (환자)것을 기록하고 미성년일 경우는 대등한 보호자의 성명 및 그 보호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하여 두는 것도 좋은 方法이라 하겠다.

병명에 있어서는 필수있는한 국제분류 번호표내에 있는 병명 (진단명)을 기록하고 임상적 및 최종의 기록란에는 齒科醫師가 行한 正確한 診斷하에 臨床적으로 만을 診察하였다면 임상적이란 란에 기록을 표시하고 최종적 모든 검사하에 診斷되었다면 최종적인 란에 기록하여 주면 되는것이고 그우측에 국제질병분류번호를 병명 (진단명)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나 病名이 2個이상인 경우는 그 분류번호도 그병명에 해당하는 번호를 2個이상 기록하여 주어야 한다.

발병일에 대하여서는 환자의진술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년, 월, 일을 정확히 진술함과 동시에 그날

대 조 필

병록번호

상 해 진 단 서

연 번 호

주민등록번호

동반자

환 자 의 주 소								
환 자 의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령	단 세	
병 명	<input type="checkbox"/> 임상 적					국제질병분류번호		
	<input type="checkbox"/> 최종진단명							
상 해 년 월 일		년	월	일	초진년월일	년	월 일	
상 해 의 원 인								
증 상	상 해 부 위							
	상 해 정 도							
상해에 대 한 소 견	진료경과 의견							
	외과적수술여부							
	입원여부							
	통상 활동 가능여부							
	식사 가능여부							
향후치 료에 한 의 견	치료를요하는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일간)
	향후 치료 의견							
	병발증발생가능여부							
기 타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	년	월	일			
병·의원주소						전화번호		
병·의원명						의사성명		
면허번호						㉞		

러문제를 수정할경우 정당한 이유없이는 할수는 없는것
이다.
그의 發行日은 정확히 그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
고, 주소, 면허번호등을 정확히 기록하며 作者의 인

장이 찍어지면 그 診斷書는 “일반진단서”이건, “상해진
단서” 이건 그 효력이 發生하는것 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진단서의 예를 소개한다.

齒科領域의 傷害診斷 期日

(健康成人에 있어서 合供症이 없는 例)

- A. 硬 組 織
1. 顎骨 骨折

- 單純骨折 約 40日 以上
複雜骨折 約 50" 以上

2. 齒牙破折

- a) 拔齒를 要하는 例(Root 파절).....約 28日 以上
- b) 拔髓를 要하는 例(Crown 파절).....約 10日 以上

3. 齒牙脫臼(機能回復時까지)

- a) 固定治療 가능한 例約 28日 以上
- b) 拔齒를 要하는 例.....約 28日 以上

4. 下顎關節 脫臼約 21日 以上

B. 軟組織(齒齦, 口唇, 舌, 頰部, 頤部)

- 1. 不適合, 治療 가능한 例.....約 7日 以上
- 2. 適合治療를 要하는 例.....約 10日 以上
- 3. 成形手術을 要하는 例(缺損時)
 - a) 齒齦缺損時.....約 15日 以上
 - b) 舌缺損時.....約 30日 以上
 - c) 口唇缺損時.....約 3個月 以上
 - d) 頰部缺損部.....約 3個月 以上
 - e) 頤部缺損部.....約 3個月 以上

作成者(가나다 順)

- 金東順 大齒協會學術委員長
- 金英海 서울大學校齒科大學保存學敎室敎授
- 金用瑄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口腔外科學敎室敎授
- 金周煥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診斷學敎室 敎授
- 閔丙一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副敎授
- 安炯珪 大韓齒科放射線學會長
- 吳應瑞 前·서울齒科醫師會長
- 鄭淳慶 前·大韓顎顔面成形外科學會長
- 趙伶元 前·大齒協會審査理事

無過失責任論: 運轉士가 事故를 내어도 車主가 治療費 등을 付는 것을 말함.

鑑定書: 診斷書後에도 쓸수있음. 詳細한것, 治療費까지 計算할 수 있음.

注意義務: 醫師가 自己가 自信이 없는데는 專門家 또는 綜合病院으로 보내는 것을 말함.

반진단서 (양식, 예 1)

병록번호 73-2400

진 단 서

연 번호 73-69

주민등록번호

대 조 직 인

1. 환자의 주소	경기도 ○○군 ○○읍 교문일리 310						
2. 환자의 성명	문 ○ 래	성별	남·여	생년월일	1956년 7월 19일	연령	만 18 세
3. 병 명	1) 하악골 분쇄골절.					국제질병분류번호	
× 임상적	2) 좌측 구순 우각부 결손급 열상					802. 3	
□ 최종						906	
4. 발 병 일	1973년 10월 25일 오후 5:40분 (환자진술)						
5. 항 후 치 료 의 견	상기병명으로항후 약 50일이상 악골고정 가로를 요함. (단 합병증이 없는한) 구순우각부 결손 성형은 3個月 이상을 요함. (단합병증이 없는한)						
6. 비 고	하악골 분쇄골절로 골이식 급구강외과 영역이외는 포함되지 않음.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73년 10월 26일						
병·의원주소	작성자의 주소와 원명						
병·의원명	전화번호						
면허번호	10×1		의사성명 조 ○ ○ ㉠				

(참 고)

- 1. 본인 확인은 진단의사가 주민등록증과 대조 (미성년자 일 때는 기타 본인을 특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확인하고 날일한다.
- 2. 병명은 임상적(인두렛손)과 최종진단명을 일 □표에 ×표로 표한다.
- 3. 병명과 국제질병 분류번호를 함께 기입한다.

(예 2)

대조필 인

병록번호 73-0000

진 단 서

연 번호 73-00

주민등록번호

1. 환자의 주소	서울특별시 성○○구 ○○동 270~16						
2. 환자의 성명	이 ○ 화	성 별	남·여	생년 월일	1967년 5월 10일	연 령	만 7 세
3. 병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상적 <input type="checkbox"/> 최종	1) 상순하순열상 2) 상악 좌우측 중절치 및 좌측 우측절치 하악 양측중절 치 및 좌측우측절치 부분탈구.				국제 질병분류번호 873-7 525-9		
4. 발 병 일	1973년 10월 22일 오전 8시(동반자, 가해자부친 이석순씨 진술)						
5. 향 후 치 료 의 견	향후 약 4주간의 상하악중절치의 고정가료가 요하며 치수 및 치아의 형성과정에 있으므로 치근형성 및 치수의 생존유무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임상적 및 치과X-선학적 검진이 요구됨						
6. 비 고	합병증으로써는 치수괴사 및 치근단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염증이 유발될 경우 미형성된 치근이므로 근간충전이 불가능 하므로 발치(拔齒) 하여야 함.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73년 10월 ○○일						
병·원의주소							
병·의 원 명	(병원, 의원, 주소, 기록)				전화번호		
면 허 번 호	10×1			의사성명 <u> </u> <u> </u> <u> </u> 인			

(참 고)

1. 본인 확인은 진단의사가 주민등록증과 대조(미성년자 일때는 기타 본인을 특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확인하고 날인한다.
2. 병명은 임상적(인푸렛손)과 최종진단명을 택일 표에 표로 표한다.
3. 병명과 국제질병 분류번호를 함께 기입한다.

대 조 필

병록번호 73-2000

상 해 진 단 서

연 번 호 73-00

주민등록번호

동반자 박 정 관

환 자 의 주 소	경기도 가평군 〇〇면 〇〇리 424		
환 자 의 성 명	박 〇 숙	성 별	남·여
생년월일	67년 12월 10일	연령	만 7세
병 명	<input type="checkbox"/> 임상 적 <input type="checkbox"/> 최종진단명	1) 상악우측유중절치, 측절치, 좌측유중절치 측절치견치결손. 상악중절치, 순측치조골결	국제 질병분류번호. 525-0 802-5
상 해 년 월 일	1973년 10월 6일	초진년월일	73년 10월 10일
상 해 의 원 인	청평배에 충돌 (환자보호자진술)		
증 상	상 해 부 위	상악전치부	
	상 해 경 도	상악우측 유중절치 유측절치, 좌측유중절치 유측절치 유편치결분및 상악중절치순측치조골결(우측유중절치, 좌측유전치, 치근잔존)	
상해에 대한 소견	진 료 경 과 의 견	6個유 전치결손(외인으로) 치조골內 영구치 齒芽 발육관찰요망	
	의 파 적 수 술 여 부	2個의 잔근치근제거및 순측치조골제거술을 시행함	
	입 원 여 부	통원가능	
	통상 활동 가능여부	치과영역으로는 활동할수있음	
	식 사 가 능 여 부	치과영역질환이 합병증없이 치유된다면 식사가능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	치료를 요하는 기간	1973년 10월 10일	1973년 11월 8일 (30일간)
	향 후 치 료 의 견	구강청결 급 X-선검사로 영구치 齒芽 발육 검사를 요함	
	병발증발생가능여부	영구치 齒牙에 손상이 있을우려	
기 타	상기병명증 치아는 전부 유치임.		
<p>위와 같이 진단함.</p> <p>발 행 일 1973년 〇월 〇일</p> <p>병·의원주소</p> <p>병·의원명 (병원, 의원, 주소) 전화번호</p> <p>면 허 번 호 1001 의사성명 조 〇 〇 ㉠</p>			

이상 診斷書作成에 關한것을 간단히 추려서 그예를들 우는 本人에게 연락하여 주면 더욱 고맙겠다. 이 설명 하였다. 너무나 간단하여 의문, 추가가 있을경